

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계획

〈노동민생정책관〉

지원배경

- 코로나 19 진정세에도 불구하고, 일정 기간 저점을 지나 하반기 반등하는 U자형 회복 전망
- 매출 감소에 따른 도산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이 경기 저점에서 버틸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

지원개요

- 지원대상 : '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서울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(약 41만 400개소)
- 지원내용 : 임대료, 제세공과금 등 고정경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장당 70만원 2개월 지원
- 신청기간 : '20. 5. ~ '20. 6.
- 소요예산 : 5,740억원(추경 편성 예정)

자격조건

- ① '19년도 연매출 200백만원 미만
('19.7.1일 이후 창업자 '19년 연매출 100백만원 미만)
-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, 서울
 -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

③ '20.2.29일(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)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

※ '19.9.1일 이전 창업자

④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

- '19년도 매출 없는 소상공인 등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

- 직원수(5인 미만, 제조업·광업·건설업·운수업 10인 미만)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 확인

⑤ 단, 유흥, 사행, 도박 등 용자제한업종 지원 제외(붙임 1 참조)

신청절차

○ '20.5월 중순 이후 온라인 접수 선행(약 5주간) 후 6월말경 오프라인 접수

- 추경일정, 시·정부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일정 등 고려

- 5부제 등 접수 분산 정책 시행

○ 제출서류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등 최소화

-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확인 절차 전제, 서류 최소화(협의중)

추진일정

○ 온라인 접수 (5부제 시행) : 5 ~ 6월말

○ 현장 방문접수 (5부제 시행) : 6월말 ~

○ 영업자금 지급 : 2개월간 2회 지급

※ 5월 신청 시 : 5, 6월 지급, 6월 신청 시 : 6, 7월 지급

붙임1

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

표준산업분류	지원제한 업종
46107 중	골동품, 귀금속 중개업
46416 및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.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56211	일반 유흥주점업
56212	무도 유흥주점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91	무도장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68	부동산업. 다만, 부동산관련 서비스업(682) 제외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. 단, 손해사정업(66201), 보험대리 및 중개업(66202)은 제외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기타	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·향락 등 불건전업종, 기타 국민보건·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·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